

# 김포시 폭염·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607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2025. 4. 8.  
제출자 정영혜, 김계순 의원

## 1. 제안이유

-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폭염과 이상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,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폭염·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(안 제4조~제5조)
- 라. 폭염·한파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마. 재난도우미 지정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자연재해대책법」, 「기상법 시행령」, 「경기도 폭염·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,
- 나. 예산조치 : 별도협의
- 다. 그 밖의 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가) 예고기간 : 2025. 4. . ~ 2025. 4. .
    - 나) 예고결과 :
  - 2) 부서협의
    - 가) 협의기간 : 2025. 3. . ~ 2025. 4. .
    - 나) 협의결과 :
  - 3) 관련부서 : 안전기획관

# 김포시 폭염·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폭염·한파에 대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·한파에 따른 김포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폭염”이란 「기상법 시행령」 제8조의2 및 별표 1 특보의 기준에 따른다.
2. “한파”란 「기상법 시행령」 제8조의2 및 별표 1 특보의 기준에 따른다.
3. “취약계층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9호의 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.
4. “폭염·한파 저감시설”이란 폭염·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폭염·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김포시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폭염·한파로부터 김포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예방계획의 수립 등)** ① 시장은 폭염·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·한파 피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폭염·한파 피해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폭염·한파 현황 및 전망
2. 폭염·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
3. 무더위·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
4. 폭염·한파 저감조치 운영 방안
5. 폭염·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

6. 폭염·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

7. 그 밖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·한파 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**제5조(실태조사)**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**제6조(폭염·한파 피해 지원)** ① 시장은 폭염·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폭염·한파 저감 시설의 설치·운영
2. 폭염·한파 완화를 위한 냉·난방 관련 물품 보급
3. 폭염·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냉·난방비 지원 사업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,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7조(재난도우미 지정·운영)** 시장은 폭염·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통장, 이장
2.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
3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
4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
5. 생활지원사
6.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

**제8조(협력체계 구축)** 시장은 폭염·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**

[시행 2024. 7. 17.] [법률 제20030호, 2024. 1. 16., 일부개정]

- 행정안전부(안전정책총괄과) 044-205-4124
- 행정안전부(재난안전점검과-안전점검, 안전조치명령, 지역축제) 044-205-4242,4244,4254,4266
- 행정안전부(재난대응훈련과-재난대비훈련, 종사자교육) 044-205-5294, 5295
- 행정안전부(재난대응총괄과-위기관리메뉴얼, 재난사태, 재난 예보·경보 등 응급조치) 044-205-5221, 5218, 5213
- 행정안전부(복구지원과-피해신고, 복구계획, 특별재난지역) 044-205-5317
- 행정안전부(재난보험과-재난보험) 044-205-5357
- 행정안전부(재난관리정책과-재난관리기금, 특별교부세) 044-205-5120, 5126
- 소방청(대응총괄과) 044-205-7568
- 해양경찰청(수색구조과-긴급구조) 032-835-2246

**제3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9. 12. 29., 2011. 3. 29., 2012. 2. 22., 2013. 3. 23., 2013. 8. 6., 2014. 11. 19., 2014. 12. 30., 2015. 7. 24., 2016. 1. 7., 2017. 1. 17., 2017. 7. 26., 2018. 9. 18., 2019. 3. 26., 2019. 12. 3., 2020. 6. 9., 2020. 12. 22., 2021. 6. 8., 2023. 5. 16., 2024. 1. 16.>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  - 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「우주개발 진흥법」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  - 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·다중운집인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, 「우주개발 진흥법」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
- 다. 삭제 <2013. 8. 6.>
2. “해외재난”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.
3. “재난관리”란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4. “안전관리”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  - 4의2. “안전기준”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,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, 안전기준의 분야,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5.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  - 가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)
  - 나. 지방행정기관·공공기관·공공단체(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)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- 5의2. “재난관리주관기관”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.
6. “긴급구조”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

- 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, 응급처치,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.
7. “긴급구조기관”이란 소방청·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. 다만,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·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.
  8. “긴급구조지원기관”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·시설 및 장비,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.
  9. “국가재난관리기준”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·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.
    - 9의2. “안전문화활동”이란 안전교육, 안전훈련,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.
    - 9의3. 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 등 신체적·사회적·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
  10. “재난관리정보”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, 동원가능 자원정보, 시설물정보, 지리정보를 말한다.
    - 10의2. “재난안전의무보험”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(共濟)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.
  11. “재난안전통신망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·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·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.
  12. “국가핵심기반”이란 에너지, 정보통신, 교통수송,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, 국민의 안전·건강 및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.
  13. “재난안전데이터”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0. 6. 8.]

**제4조(국가 등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3. 8. 6., 2023. 5. 16.>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3.>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 1. 16.>
-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2. 22., 2014. 12. 30., 2015. 7. 24., 2019. 12. 3., 2024. 1. 16.>

[전문개정 2010. 6. 8.]

# 자연재해대책법

[시행 2024. 9. 15.] [법률 제19702호, 2023. 9. 14., 타법개정]

행정안전부(재난관리정책과) 044-205-5118

행정안전부(재난영향분석과-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) 044-205-5169, 5171~2

행정안전부(재난영향분석과-우수유출저감대책) 044-205-5166

행정안전부(복구지원과-재해복구) 044-205-5315

**제3조(책무)**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,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3. 21.>

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(이하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0. 22., 2017. 10. 24., 2020. 1. 29.>

1.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

- 가.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
- 나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·관리
- 다.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

2. 풍수해 예방 및 대비

- 가. 삭제 <2017. 10. 24.>
- 나. 수방기준 제정·운영
- 다.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·운영
- 라. 내풍(耐風)설계기준 제정·운영
- 마.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

3. 설해(雪害)대책

- 가. 설해 예방대책
- 나.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
- 다.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

4. 낙뢰대책

- 가. 낙뢰피해 예방대책
- 나. 각 유관기관 지원·협조 체제 구축
- 다.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

5. 가뭄대책

- 가.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·장기대책
- 나.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·유지
- 다.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
- 라.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

6. 폭염대책

- 가. 폭염피해 예방대책
- 나.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
- 다. 각 유관기관 지원·협조 체제 구축
- 라.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

7. 한파대책

- 가. 한파피해 예방대책
- 나.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
- 다. 각 유관기관 지원·협조 체제 구축

라.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

8.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

가.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

나. 재해정보 관리·전달 체계 구축

다.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

라. 비상대처계획 수립

9.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, 점검 방법, 점검 결과의 기록·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시장[특별자치시장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(이하 “행정시장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, 주민 교육·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2. 22., 2017. 3. 21.>

⑥ 국민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·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,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·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3. 7.]

## 기상법 시행령

[시행 2024. 10. 25.] [대통령령 제34954호, 2024. 10. 22., 타법개정]

기상청(혁신행정담당관-총괄) 042-481-7299  
기상청(기획재정담당관-기본계획 수립) 042-481-7275  
기상청(관측정책과-관측) 042-481-7331  
기상청(예보정책과-예보 및 특보) 02-2181-0496  
기상청(기후정책과-기후) 042-481-7376  
기상청(기상기후인재개발원-기상 지식보급 및 교육) 02-2181-0032  
기상청(기상서비스정책과-기상정보 제공, 과학관·박물관) 042-481-7446

**제8조의2(특보)**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. 이 경우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.

1. 호우
2. 대설
3. 태풍
4. 강풍
5. 황사
6. 건조
7. 한파
8. 폭염
9. 풍랑

10. 폭풍해일

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별표 1에 따른 특보의 기준을 말한다.

③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예상되는 특보의 종류
2. 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구역
3. 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
4.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제1항에 따른 특보 및 제3항에 따른 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주변 해역으로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4. 2. 6.]

특보의 기준(제8조의2제2항 관련)

종 류	주 의 보	경 보
호 우	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	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
대 설	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	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 예상될 때. 다만, 산지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30cm 이상 예상될 때를 말한다.
태 풍	태풍으로 인하여 강풍, 풍랑, 호우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	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. 강풍, 풍랑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2.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
강 풍	육상에서 풍속 50.4km/h(14m/s)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.0km/h(20m/s) 이상 예상될 때. 다만, 산지에서는 풍속 61.2km/h(17m/s)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.0km/h(25m/s) 이상 예상될 때로 한다.	육상에서 풍속 75.6km/h(21m/s)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.6km/h(26m/s) 이상 예상될 때. 다만, 산지에서는 풍속 86.4km/h(24m/s)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.0km/h(30m/s) 이상 예상될 때로 한다.
황 사	-	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(PM-10) 농도 800 $\mu$ g/m <sup>3</sup>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건 조	실효습도 35% 이하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	실효습도 25% 이하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한 파	10월 ~ 4월 사이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.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℃ 이상 하강하여 3℃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℃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2. 아침 최저기온 -12℃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3.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	10월 ~ 4월 사이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.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℃ 이상 하강하여 3℃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℃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2. 아침 최저기온 -15℃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3.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

폭염	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. 일 최고 체감온도 33℃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.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	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. 일 최고 체감온도 35℃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.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
풍랑	해상에서 풍속 50.4km/h(14m/s)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 예상될 때	해상에서 풍속 75.6km/h(21m/s)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 예상될 때
폭풍해일	천문조, 폭풍,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	천문조, 폭풍,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

비고

1. “실효습도”란 물체의 건조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수일 전부터 현재까지의 습도를 가중하여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.
2. “천문조”란 달이나 태양과 같은 천체의 인력(引力)에 의하여 일어나는 조수간만의 차를 말한다.

## 경기도 폭염·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폭염·한파에 따른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폭염”이란 「기상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.
2. “한파”란 「기상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.

**제3조(책무)** ① 경기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폭염·한파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도지사는 폭염·한파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·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.
- ③ 도지사는 도내 시군의 폭염·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.

**제4조(종합대책 수립)** ① 도지사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의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경기도 폭염·한파 종합대책(이하 “종합대책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폭염·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
2. 폭염·한파 현황 및 전망
3. 폭염·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
4. 폭염·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계획
5. 폭염·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

③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고,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5조(실태조사)** ①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, 도내 시군, 관계기관 또는 법인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6조(사업)**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폭염·한파 저감 시설 설치
2. 냉·난방 물품 지원 사업
3. 냉·난방비 지원 사업
4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, 지원내용 등 사업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**제7조(홍보)** 도지사는 폭염·한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협력체계 구축)** 도지사는 폭염·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, 도내 시군,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·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·한파 대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<2024.10.1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